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: '98년 12월 3일

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'98년 12월 3일

라. 상정및의결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8년 12월22일) 상정 의결

2.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최 광문

가. 제안사유

○쓰레기봉투의 여백을 이용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물 게재 사용료 과다로 광고게재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

○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재원을 확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광고물 게재사용료 부과기준 (제11조제2항) 개정
(현행)

○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제사용료 징수조례
를 준용

- 규격 : 5cm×1cm 기준 (전단형)
 - 5,000부 미만 : 3,000원
 - 5,000~10,000부 : 5,000원
 - 10,000~30,000부 : 7,000원
 - 30,000부 초과 : 10,000원(매 10,000부 초과시마다 1,000원 가산)
- (개정)

-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×20/1,000×계약매수
- 개정효과 : 광고물 게재사용료 인하 (60 ~70%) 예상

3.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

- 전문위원 전 영 회

- 1997년 5월6일 개정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『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』의 규정은
-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는 무관하게 광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봉투의 특성상 광고면적이 넓어 광고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 광고물게재사용료가 과다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기피하는 등 다수의 광고주가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.
- 그러므로 『광고물게재 사용료는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× 20/1,000×계약매수로 한다라는 동조례 개정안은 소량의 광고가 가능하며 60~70%의 광고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광고물게재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많은 광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개정

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번 조례개정은 긍정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.

○ 그러나 광고의 표준 규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재된 광고 기본적으로 대중적이고 공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과 크게 채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8년 월 일
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쓰레기봉투의 여백을 이용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물 게재사용료 과다로 광고게재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
-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광고물 게재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재원을 확충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광고물 게재사용료 부과기준 (제11조제2항) 개정
(현행)
-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제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
 - 규격 : 5cm×1cm 기준 (전단형)
 - 5,000부 미만 : 3,000원
 - 5,000~10,000부 : 5,000원
 - 10,000~30,000부 : 7,000원
 - 30,000부 초과 : 10,000원(매 10,000부 초과시마다 1,000원 가산)
- (개정)
-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×20/1,000×계약매수
- 개정효과 : 광고물 게재사용료 인하 (60 ~70%) 예상

3. 참고사항

- 목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
-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광고료 규정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②항중“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”를 “광고물 게재 사용료는 용량별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×20/1,000×계약매수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